

어느 이주노동자의 죽음

고영란

위험한 일에 내몰리는 현실

지난 12월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인한 스물네 살 김용균 씨의 죽음은 원청과 하청, 간접고용 등으로 최소한의 인원만 일터에 투입하는 용역 회사 노동자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 주었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반지가 갖고 싶었던 김용균 씨에게 택배가 도착했지만, 반지의 주인공은 세상을 떠나고 그의 꿈과 낭만은 유품으로 남았다.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전국의 또 다른 ‘김용균’들이 컵라면과 팻말을 들고 연말에 추모 행사와 촛불행진을 하게 된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증언도 계속되면서, 전봇대나 옥상, 난간 등에서 혼자 일하는 인터넷 설치 기사, 여

름철에 실내 온도 40도가 넘는 조리실에서 일하는 노동자 등은 ‘다치거나 아프면 대부분 자기 부담으로 치료해야 하는 현실’을 고발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려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 등에서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어떨까?

한국에 처음 온 이주노동자들은 우선 한국어로 의사를 소통하는 것이 가장 답답하고 힘들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려면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르고 합격해야 하지만, 실제로 타국에 와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몸이 아프거나 사고로 다쳤을 때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에 온 지 6개월 미만인 이주노동자들에게 특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언어’와 ‘일의 숙련도’ 부분에서 미숙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영세한 제조업체의 경우, 안전 교육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낡은 기계와 장비를 교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공장 가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사업주 쪽에서 위험에 대한 주의를 충분히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한다.

2017년 5월 경북 군위 등에서 축사 정화조를 청소하던 중국, 네팔, 태국 출신 노동자 네 명이 사망한 사건은 이런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 사업주들은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분뇨 유해 가스 농도를 측정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의 산재 피해 상황을 조사한 한 자료(『2017 경기도 외국인 산업재해자 실태 조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 의하면,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들 중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을 신청한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52.9%에 해당하고,

2012년~2017년 5월 기준 이주노동자 재해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5월
재해 발생 건 수	6,390	5,556	6,014	6,419	6,703	2,491
재해자 수	6,404	5,586	6,044	6,449	6,728	2,497
사망자 수	106	88	85	103	88	41
사고 부상자 수	6,165	5,373	5,839	6,227	6,524	2,410

자료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이들 중에 산재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경우는 36.4%에 해당했다. 산재를 당했음에도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신청할 수 있는지 몰라서”(36.1%), “불법채류 · 불법고용이 드러날까 봐”(12.5%), “신청하지 않겠다고 사업주와 약속해서”(5.6%) 등으로 나타났다. 산재 피해 이주노동자들은 치료나 요양이 끝난 뒤에 계속 일하는 경우가 64.4%였고, 그중에서 70.9%는 사고가 났던 사업장으로 복귀했다. 산재 치료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나 요양이 종결되고(45.7%),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본래 일하던 사업장으로 돌아가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집계한 『2012~2017년 이주노동자 재해 현황』을 보면, 5년 동안 산재로 이주노동자 511명이 사망했다. 숫자상으로만 파악되는 이들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통계에 나오지 않은 인원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직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

한국 정부와 인력 송출 양해각서MOU를 주고받은 16개국(중국, 베

트남, 네팔,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의 취업 희망자들은 취업비자(E-9)를 받아 최초에 취업한 사업장에서 3년 일할 수 있다. 계약을 연장하면 1년 10개월 더 일할 수 있는데, 그 결정은 사업주가 한다. 최대 4년 10개월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는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로 나뉜다. 동남아시아 등에서 오는 이주노동자는 일반고용허가제의 ‘E-9(비전문 취업비자)’ 비자로 입국한다. 국외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고용허가제를 적용하면 ‘H-2(방문취업비자)’ 비자로 입국하며, 한국어 시험 등을 보지 않아도 되고 사업장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고용허가제와 차이가 있다.

일반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장 힘든 점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이다. 회사 폐업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사업주 허락이 없으면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고,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사유가 있더라도 3개월 이내에 허가된 분야로 취업하지 못하면 비자가 만료되어 추방 대상이 된다. 정해진 기간에 지정된 사업체에서만 일할 수 있는 이 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법적으로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해 놓아서 부당한 노동이나 임금 체불, 인권침해, 산재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현실을 감내하던 이주노동자들이 최근 자살하는 사건이 이어졌다. 2017년 8월 6일, 충북 충주의 자동차 부품업체 기숙사에서 스물일곱 살의 네팔 노동자인 케서브 스투스터 씨가 이런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받았고, 다른 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네팔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안 됐습니다.” 바로 며칠 후에는 경기도 화성의 돼지 축사에서 일하던 스물다섯 살의 다벽 씨(네팔인) 씨가 “저는 이제 없습니다. 꿈이 많았지만 이뤄지지 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살했다.

2018년 6월 13일에는 서른두 살의 바하두르 씨(네팔인)가 자살했다. 충남 논산의 용접 공장에 취업해 매달 생활비를 고향집에 부쳤던 그는 고향에 아내와 두 딸이 있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지 4년 되었고, 아이들이 커 가니 돈을 더 벌어서 돌아가려고 체류 연장을 신청할 무렵에 그는 사업주로부터 “일거리가 없다”라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취업 확인서가 필요했기에,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했다. 하지만 그에게 허가된 분야가 ‘제조업’으로 고정돼 있어 다른 분야로 취업이 불가능했고,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기한을 놓치면서 그는 불법체류자가 되어 버렸다.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일자리가 금방 구해지지 않았고, 본국에서 생활비를 기다릴 아내를 위해 친구에게 돈을 빌려 보내기도 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진 그는 서울 중랑구 월릉교에서 목숨을 버렸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경기북부 사업장 변경 이주노동자 실태 및 제도개선』(2014년)에 의하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기까지의 구직 기간은 평균 34.7일이다. 임금 체불로 구직 활동을 할 경우엔 구직 기간이 더 길어져서 평균 73일 정도 걸렸다. 구직 활동 기간 중에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으로 쓰이는 비용은 1인 평균 108만872원 정도로, 정신적,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네팔 노동자 바하두르 씨가 자살에 이르기까지, 그의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

스가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간다.

폭력적인 강제 단속, 단속반이 뜨면 도망개!

2018년 8월 22일 낮 12시 5분, 경기도 김포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다. 수요일이었다. 올해 7월 중순 이후 계속되던 사상 최악의 폭염이 전국을 찜통으로 만들어 낮 최고 기온이 36~37도를 오가던 그즈음, 미안마에서 온 스물다섯 살 이주노동자 탄저테이 씨는 공사장의 다른 이들과처럼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일을 하고 건설 현장에 딸린 간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때 느닷없이 문이 열리면서 단속반이 나타났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이었다. 본능적으로 탈출구를 찾던 그는 창문을 뛰어넘었다.

그런데 단속반이 그의 다리를 붙잡았다. 밖으로 뛰어나가려던 몸이 중심을 잃으면서 그의 몸은 상체가 창밖으로 기울었고, 단속반이 다리를 꼭 잡고 놓지 않아 필사적으로 버둥거리는 사이, 간이식당 바로 아래쪽 지반 공사가 진행 중이던 8미터 지하로 머리부터 떨어졌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다. 사고 직후 그는 뇌사 상태에 빠져 깨어나지 못했다.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한국에 왔다. 뇌사 상태 보름 후에 그는 사망했고, 그의 아버지는 네 명의 한국인들에게 아들의 장기를 기증한 뒤 장례를 치렀다.

2013년 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에 왔던 그는 돈을 열심히 벌어 고향의 가족에게 보냈다. 2018년 2월, 취업비자가 만료되고 미안마로 돌아야 할 시간이 와 버렸다. 탄저테이 씨는 귀국을 미루면서 딱 1년만 더 돈을 벌기로 했다. 미등록 노동자의 길을 선택한 지 6개월째, 폭

염에 지친 8월의 점심에 그는 밥을 먹다 말고 사고를 당했다.

출입국사무소의 과잉 단속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다섯 명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A씨(24세)를 폭행한 사건으로도 언론에 드러난 적이 있다. 건설 현장의 불법체류자를 단속한다며 A씨를 때려 폭행하고 닷새 동안 보호시설에 붙잡아 둔 것이다. A씨는 3월에 경기도의 한 대학원에 입학했고, 방학을 맞아 경남 함안에 내려와 공사장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첫날 봉변을 당했다. 유학생이라고 밝혀도 소용없었다. 보호시설에서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A씨는 뇌진탕 증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피해를 입었음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내면서 검찰에선 해당 공무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시기는 8월 23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과 접촉한 직후로, 1년 단위로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그에게 대사관을 통해 합의 중용이 이뤄졌다면 거의 협박에 가까웠을 것이라는 시민단체 의견도 있다.

미등록 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는 매년 발생해 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 7월까지 미등록 체류 노동자를 단속하면서 8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탄저테이 씨처럼 목숨을 잃은 사람은 9명이었다. 대부분 단속을 피해 무리하게 도망가려다 사고가 난 것이다. 이주노동자 진영에서는 12월 말이 된 지금까지도 탄저테이 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주노동자 100만 명 시대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018년 9월 말 법무부 통계 기

준으로 2,321,820명, 그중 외국인 등록자는 1,220,626명이다. 이 중에서 전문 인력, 단순 기능 인력 등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은 583,703명, 미등록자는 335,455명으로 집계된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년 8월 말). 여기서 미등록 외국인은 불법체류자로, 2017년(251,041명)에 비해 1년 사이 10만 명가량 늘어났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최근 태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이 늘어나면서 그 수가 불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용허가제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하면 대략 100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국가인권위가 2018년 4~8월에 이주노동자 1,21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주노동자의 88%는 제조업 쪽에서 일하고 있다. 이어서 건설업(4.5%), 농축산어업(4.8%), 서비스업(1.9%) 순이다. 이주노동자 전체 임금 평균은 2,001,080원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업종보다 열악한 농축산어업

농축산어업 쪽의 평균 임금은 1,670,088원으로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다. 근무조건도 가장 나쁜 수준으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1.2시간이다. 제조업(53.9)보다 주당 평균 7.3시간을 더 일한다.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의 주간 평균 휴일은 0.7일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조항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출신이 가장 많은 12,269명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네팔(7,941명), 태국(3,817명), 미얀마(3,253명) 순으로 이어진다.

다. 다른 업종과 달리 농축산업은 특정 국가에서 노동자를 주로 도입하는데, 캄보디아는 배정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년 많은 수의 캄보디아인들이 들어온다. 업종 특성상 전문 기술이나 물리적 힘이 덜 요구되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 노동자가 많다. 컨테이너박스나 비닐하우스 같은 간이 건물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도 숙소 제공 비용으로 임금에서 20만~30만 원을 공제하게 된다. 이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

조선족 동포가 많은 건설 현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226,391명(2018년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건설 노동자의 19.5%에 해당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10명 중 2명은 이주노동자인 셈이다. 대한건설협회 연구 자료(「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2018년 5월)에 따르면, 국내에서 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1,280개 건설 현장의 설문조사 결과 미등록 노동자는 약 16만 명(15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 인력 6만7,000명(일반 E-9 12,000명, 방문 취업 동포 H-2 55,000명)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한다.

건설 현장의 이주노동자는 조선족 동포가 52.5%, 중국 한족이 26.4%, 고용허가제 인력(E-9 비자) 4.0%, 기타 외국인이 17.1%를 차지하며, 이주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직종은 형틀 목공이 33.8%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철근공이 31.3%로 나타났다. 이들의 하루 평균임금은 숙련자가 173,000원으로 내국인 임금의 87.6%, 비숙련

자는 128,000원으로 내국인 임금의 65.2% 수준에 해당한다.

고용정책과 이민정책, 사회 통합 정책으로 나아가야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우리들의 이웃으로, 친구로 함께 공존해 온 역사가 어느덧 30년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존재하다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로 취급받는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문제들은 임금 체불, 사업장 변경 제한,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강제적립금,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신분증 압류, 폭행과 폭언, 차별 대우 등이다. 최근에는 탄력근로제 적용으로 농축산업의 경우, 일이 없는 겨울철에는 휴가를 강요당하거나 이를 거절하면 해고당하는 일도 발생한다. 경영상 이유로 휴무를 강제할 때는 유급휴가가 원칙이고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단, 상시 노동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사업주들은 상시 노동자를 한두 명만 고용하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 등을 활용하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들도 노동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노동부를 통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이주노동자 근로감독관 등이 근무 환경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통장을 확인하는 등 문제의 제도적 해결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지역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에서의 전문 통역이나 상담소, 쉼터 등을 활용해 도움을 받는다. 최근에는 각 지역별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에서 한글 교육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예전보다 많아지고 있다.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나 연구자, 전문가들은 현재의 ‘고용허가제’가 결국 고용조건 하향화를 가져왔다고 결론지으며 단계적으로 ‘노동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국가 정책 면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장기 체류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정책은 이민정책과 맞물려 사회 통합 정책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보통 20대 초반 즈음에 한국에 와서 일하며 장기 체류할 경우 40대가 되는 이주노동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고, 더구나 결혼해서 이곳에서 자녀를 낳으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어려워진다. 아이가 있을 경우, 본국으로 아이를 먼저 보내고 아내 또는 남편이 이곳에 남아 돈을 벌면서 가족이 헤어지는 비극도 자주 발생한다.

30년의 역사 속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은 여전히 많지만,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갈 때 ‘사장 새끼’, ‘개새끼’ 같은 욕을 내뱉고 돌아서기보다는 이곳에서 함께한 다정한 친구, 따뜻한 이웃들, 의미 있는 시간을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시디

고영란

르포 작가, 프리랜서 편집자, 『우리 잘 있어요, 마석』을 펴냈다.